

# 2019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I. 추경예산 개요

###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1조 39억 2천 1백만 원으로 당초보다 2조 4,631억 1천 4백만원 (13.3%)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18,540,807	21,003,921	2,463,114	13.3	
시 세	17,785,836	18,221,310	435,474	-	
세외 수입	경상적	58,384	58,384	-	
	임시적	696,587	582,317	-114,27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	2,141,910	2,141,910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구분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일반회계		18,540,807	21,003,921	2,463,114	13.3
시	세	17,785,836	18,221,310	435,474	2.4
	지방소비세	1,359,199	1,794,673	435,474	32.0
	세외수입	754,971	640,701	-114,270	△15.1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87,255	472,985	-114,270	△19.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2,141,910	2,141,910	순증
	순세계잉여금	-	2,141,910	2,141,910	순증

#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	2019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지방세 (계)	17,785,836	18,221,310	435,474	2.4
보 통 세	15,859,908	16,295,382		
취 득 세	4,273,788	4,273,788		
주 민 세	544,955	544,955		
재 산 세	2,615,116	2,615,116		
자 동 차 세	1,132,092	1,132,092		
레 저 세	131,021	131,021		
담 배 소 비 세	565,175	565,175		
지 방 소 비 세	1,359,199	1,794,673	435,474	32.0
지 방 소 득 세	5,238,562	5,238,562		
목 적 세	1,704,361	1,704,361		
지역자원시설세	284,868	284,868		
지 방 교 육 세	1,419,493	1,419,493		
지 난 년 도 수 입	221,567	221,567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9년 예산	2019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세 외 수 입 ( 계 )	754,971	640,701	△114,270	△15.1
경 상 적 세 외 수 입	58,384	58,384	-	-
공 유 재 산 임 대 료	12,187	12,187	-	-
기 타 사 용 료	2,092	2,092	-	-
증 지 수 입	726	726	-	-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39,200	39,200	-	-
기 타 이 자 수 입	4,179	4,179	-	-
입 시 적 세 외 수 입	696,587	582,317	△114,270	△16.4
시 유 재 산 매 각 수 입	587,255	472,985	△114,270	△19.5
과 징 금 및 과 태 료 등	679	679	-	-
기 타 수 입	33,861	33,861	-	-
체 납 처 분 수 입	2	2	-	-
그 외 수 입	106,675	106,675	-	-
시 금 고 출 연 금	102,800	102,800	-	-
법 인 카 드 캐쉬 백 적 립 금	572	572	-	-
시 유 재 산 위 탁 예 금 이 자 수 입	52	52	-	-
부 가 가 치 세 매 입 세 액 공            제            액	1,246	1,246	-	-
주 행 분 자 동 차 세 관 련 이 자 액 등	2,005	2,005	-	-
지 난 년 도 수 입	1,976	1,976	-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9년 예산	2019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	2,141,910	2,141,910	순증
순 세 계 잉 여 금	-	2,141,910	2,141,910	순증

##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5,248억 8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2조 3,874억 4천 6백만 원 대비 1,374억원(5.8%)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총 계	2,387,446	2,524,880	137,434	5.8
행정 관리	소 계	768,800	768,800	-
	행정운영경비	736,925	736,925	-
	재무활동	-	-	-
	사업비	31,875	31,875	-
교 부 금	1,618,647	1,756,080	137,434	8.3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19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5.2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1,618,647	1,618,647	1,756,080	137,434	8.3
재정보전금	1,243,665	1,243,665	1,331,649	87,984	7.1
시세 징수교부금	374,982	374,982	424,431	49,450	13.2

## Ⅱ . 검토의견

### 1.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초과세입금 발생에 따른 지방소비세 4,354억 7천 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조 1,419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부지감소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142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조 4,631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재무국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구분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일반회계		18,540,807	21,003,921	2,463,114	13.3
시 세		17,785,836	18,221,310	435,474	2.4
지방소비세		1,359,199	1,794,673	435,474	32.0
세외수입		754,971	640,701	△114,270	△15.1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87,255	472,985	△114,270	△19.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2,141,910	2,141,910	순증
순세계잉여금		-	2,141,910	2,141,910	순증

#### 가. 지방소비세 세입 증액 편성

- 지방소비세 세입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1조 3,592억원) 대비 32.0%(4,355억원) 증액된 1조 7,947억원으로,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30발표)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자,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

에서 7:3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따라, 제1단계로 2019년도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5%로 인상<sup>1)</sup>하였는바, 추가세입금(4,35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19년 지방소비세 예상 증가액 : 전국 3조 2,470억원, 우리시 4,355억원

※ 지방소비세율 11%(기존)→15%(2019년)→21%(2020년) 인상

※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2010년 신설된 지방세로, 2013년도까지는 세원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자 부가가치세의 11%를 세원으로 하여 사도에 안분하고 있는 세목임.

○ 2018년도 지방소비세 결산규모는 시세 세입예산의 7.3%(13,991억원)를 차지하는 세원이나, 경제 동향에 민감한 부가가치세를 세원으로 예산 대비 수납률이 15%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주요 경기동향 및 소비정책 등을 반영한 적정 세입규모 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소비세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예산 수납률
지방 소비세	2018	1,212,695	1,399,063	1,399,063	115.4
	2017	1,055,931	1,305,360	1,305,360	123.6
	2016	950,428	1,092,322	1,092,322	114.9
	2015	993,159	977,789	977,789	98.5
	2014	975,594	977,587	977,587	100.2

1) 「지방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 한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면, 2020년도 지방소비세율을 6% 추가 인상하여 총 21%가 되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6,244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나,

※ 2020년 지방소비세율 6%p 인상액 : 전국 5조 2,330억원, 서울시 6,624억원

○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총 5.8조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축소(3.5조원)하고자 하고, 그 사업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늘어난 세수로 보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부담행위를 추진하고 있는바, 재정분권 추진이 실속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 지방소비세율 6%p 인상액 : 전국 5조 2,330억원, 서울시 6,624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 ▶ 목 적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촉진
-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재 원 : 주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 규 모 : 10조 7,485억원('19년 예산 기준) ※ 포괄보조사업 5조 7,960억원

※ 현행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면 보전분(세율 6%)은 취득세구인하 조치(2013.12.28.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취득세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고자 신설되었는바,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한 세율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 세율 인하에 대한 보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별과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음.



## 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 감액 편성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5,873억원) 대비 15.1%(1,142억원) 감액된 4,730억원으로,
- 감액 사유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부지(강남구 삼성동 171, 171-1, 31,543㎡) 중 일부(7,000㎡, 22.2%)는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변경·활용하고, 잔여부지(24,543.9㎡, 77.8%)만을 당초 매각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매각부지 면적 변경에 비례하여 세입 예산(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감액(△22.2%)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제2차 수도권주택공급계획('18.12.19)에 의해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주택공급 부지로 선정함에 따라 잔여부지에 한해서 매각
  - 잔여부지 면적 : 31,544㎡ → 24,544㎡ (△22.2%)
  - 재산가격 : 약 9,363억원 → 7,285억원('16.11 감정평가 기준, △22.2%)
  - ※ 2019년 당초 예산액 : 5,150억원(계약금 10%, 잔액 50%)

- 다만, 매각수입금 산정의 선결 절차인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지역발전본부, 2019년 7월말 예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분할 면적 규모, 지번 정리, 용도 지정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이에 수반하여 세입예산(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역발전본부는 2019년 7월 말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예정하고 있음.

### 〈재무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후 향후 매각 계획〉

- '19.7월 : 지구단위계획 변경(지역발전본부)
- '19.7월 : 주택공급지 토지 분할(2주)
- '19.7월 : 매각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19.8월 : 감정평가(2주)
- '19.9월 : 공개매각(10일) 및 계약금 징수
- '19.11월: 잔금 징수(계약후 60일 내 납부)

- 매각부지에 대한 적절한 세입 조정을 위해서는 선결 절차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지역발전본부, 2019년 7월말 예정)이 완료되어 면적 등이 확정된 후에 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변경된 매각부지 가액에 합당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14,961	400,691	△114,270	△22.2

※ 기정예산은 최종(2016년 11월) 감정평가액: 936,292백만원의 55%

- 예산편성 추계액 또한 2016년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적정가격 산정이라고 할 수 없고, 본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건은 6년째 매각 불발로 인하여 매년 막대한 세입결손을 초래하여 서울시 재정운용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하고 있음.
- 재무국의 향후 매각 계획을 보면, 금번 회기(제287회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은 후, 7월에 사업부지 분할·확정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8월 감정평가 및 9월 매각 공고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여 11월까지 잔금을 징수함으로써 연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매각되지 않고 있는 본 사업부지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에서부터 잔금 징수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 하는 계획은 매각 절차상 당해연도 내에 매각이 불투명한바,
- 또다시 매각 불발로 인해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무국은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지속하여 위반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세입예산(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감액 편성하여 무리한 세출예산의 편성 및 감정평가 수수료 매물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관련 감정평가비 매물비용 누계: 1,278백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관련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 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예 산	300,000	473,462	534,875	437,600	514,961	514,961
	결 산	-	-	-	-	-	-
세 출 (감정평가 수수료)	예 산	-	663	663	615	615	615
	결 산 (매물비용)	-	663	615	-	-	-

#### 다.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

○ 2018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세입은 27조 947억원, 세출은 24조 6,988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은 2조 3,960억원이며, 이월사업비(2,162억원)와 보조금반납액(37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조 1,419억원으로 전년(2조 4,314억원) 대비 2,895억원이 감소 (11.9%)하였음.

〈2019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세입결산 (A)	세출결산(B)			보 조 금 집행잔액 (C)	순 세 계 잉 여 금 (A-B-C)
		계(a+b)	집행액(a)	이월액(b)		
25조 4,772	27조 947	24조 9,150	24조 6,988	2,162	378	<b>2조 1,419</b>

- 서울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지방재정법」(제7조) 및 「지방자치법」(제1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예산운용사항이라고 할 것임.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A)+(B)-(C)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보조금 집행잔액 (C)
	금액	증가율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62,161	37,828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33,506	30,505
‘17년 편성	2,058,790	21.9	1,720,219	368,980	30,409
‘16년 편성	1,688,784	-	1,268,884	450,997	31,096

-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93.7%(2조 68억원)는 지방세 초과징수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방세 과소추계로 인한 과도한 초과세입 발생은, 해당 초과세입만큼 긴급한 사업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므로, 결국 대 시민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임.

**< 최근3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률 (B/A)
2018	170,965	170,965	191,033	20,068	111.7
2017	155,554	155,554	178,171	22,617	114.5
2016	141,258	141,258	165,693	24,435	117.3

- 다만, 지방세 세입예산 예산액 대비 결산율을 보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바, 이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 등 지방세 세입 환경의 둔화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으로, 향후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지방세 징수 등 세수증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세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19년 4월말 현재 지방세 세입은, 예산 대비 33.8%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전년(36.0%) 대비 2.2% 감소된 것이며, 징수액 규모로는 전년 대비 1,580억원이 부족 징수되고 있는 것임.

※ 2019년도 재무국 지방세 수입 예산(추경 편성 전)은 17조 7,858억 3천 6백만원임.

**<최근 3년 예산액 및 징수액 현황(4월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예 산	징 수	진도율	예 산	징 수	진도율	예 산	징수	진도율
합 계	155,554	47,350	30.4	170,965	61,608	36.0	177,859	60,028	33.8
보 통 세	137,536	42,959	31.2	151,883	56,913	37.5	158,599	55,597	35.1
취 득 세	40,070	15,630	39.0	43,946	19,543	44.5	<b>42,738</b>	<b>16,106</b>	37.7
레 저 세	1,268	367	28.9	1,321	369	27.9	1,310	365	27.9
담 배 소비세	6,343	2,192	34.6	6,244	1,764	28.3	5,652	1,670	29.5
지 방 소비세	10,559	3,943	37.3	12,127	3,942	32.5	13,592	5,399	39.7
주 민 세	4,788	1,600	33.4	5,052	1,736	34.4	5,449	<b>1,892</b>	34.7
지 방 소득세	42,298	15,175	35.9	48,483	24,987	51.5	<b>52,386</b>	<b>25,811</b>	49.3
재 산 세	21,664	21	0.1	23,694	12	0.1	<b>26,151</b>	<b>-37</b>	-0.1
자 동 차 세	10,546	4,031	38.2	11,016	4,560	41.4	<b>11,321</b>	<b>4,391</b>	38.8
목 적 세	15,685	3,185	20.3	16,716	3,579	21.4	<b>17,044</b>	<b>3,123</b>	18.3
지 역 자 원 시 설 세	2,589	9	0.3	2,760	8	0.3	<b>2,849</b>	<b>4</b>	0.1
지 방 교육세	13,096	3,176	24.3	13,956	3,571	25.6	<b>14,195</b>	3,119	22.0
지 난 연 도 시 세	2,333	1,206	51.7	2,366	1,116	47.2	<b>2,216</b>	1,308	59.0

- 특히, 취득세는 4월말 현재 전년 동기(19,543억원) 대비 3,437억원이 부족 징수되고 있는 등, 전년대비 전반적인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바, 적극적인 세원 관리와 징수 확대를 위한 계획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년도 취득세 결산액 51,917억원

※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7월 재산세 부과후 정상 반영됨.

##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5,248억 8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2조 3,874억 4천 6백만원 대비 5.8%(1,374억원) 증액된 수준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총 계	2,387,446	2,524,880	137,434	5.8
행정 관리	소 계	768,800	768,800	-
	행정운영경비	736,925	736,925	-
	재무활동	-	-	-
	사업비	31,875	31,875	-
교 부 금	1,618,647	1,756,080	137,434	8.3

○ 주요 사업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정보전금” 사업은 당초 예산(1조 2,437억원) 대비 7.1%(87,984백만원) 증액한 1조 3,316억원이고, “시세 징수교부금” 사업은 당초 예산(3,750억원) 대비 13.2% 증액한 4,244억원으로 2개 사업에 1,374억원(8.4%)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9 예산	추 경(안)	증 감	비 율
계	1,618,647	1,756,080	137,434	8.3
재정보전금	1,243,665	1,331,649	87,984	7.1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308-05)	1,243,665	1,331,649	87,984	7.1
시세 징수교부금	374,982	424,431	49,450	13.2
징수교부금(308-02)	374,982	424,431	49,450	13.2

## 가.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3,316억 4천 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조 2,435억 6천 5백만원 대비 7.1%(879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재정보전금 : 지방세기본법상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자치구에 균등 교부하는 법정경비

※ 18년 결산액(1조 1,837억 7천 9백만원) - '18년 예산액(1조 957억 9천 5백만원)

-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제26조 및 제27조)에 근거<sup>2)</sup>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현황\_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교부액	1,165,213	1,077,375	982,902	933,536	906,538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2018년 교부액=2017년 결산상 부족(정산)교부액(69,418)+2018년 예산액(1,095,795)

2) - 「지방세 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27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된 법정 경비임.

※ 「지방세법」 부칙(2000.12.29.개정) 제8조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 결정한다.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소분 자치구 보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교부액	32,380	33,280	33,980	34,480	35,160

-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자치구 세입(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공동재산세 전출금 추가 정산분 879억 8천 4백만원(7.1%)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9 예산	추 경(안)	증 감	비 율
재정보전금	1,243,665	1,331,649	87,984	7.1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308-05)	1,243,665	1,331,649	87,984	7.1

-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재산세 추계로 인한 과도한 세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 재무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임.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 분	재 산 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조)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조) • 주 택 : 시가표준액의 60% • 토 지 : 시가표준액의 70% • 건 물 : 시가표준액의 70%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동재산세 과세대상은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 또한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재정격차가 4.7배(강북구 610억원, 강남구 2,869억원) 4.7배)에 달하고 있는바, 공동 재산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지방세기본법」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 재정보전금 제도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실적 > (결산액 기준)**

2016년도	○ 강남, 강북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6.5배(강남 4,001억, 강북 243억)에서 4.6배(강남 2,000억, 도봉 527억)로 완화
2017년도	○ 강남, 도봉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6.7배(강남 4,289억, 도봉 257억)에서 4.6배(강남 2,577억, 도봉 561억)로 완화
2018년도	○ 강남, 도봉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7.7배(강남 4,792억, 강북 271억)에서 4.7배(강남 2,869억, 강북 610억)로 완화

〈 2018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격차 완화 효과, 강북구 기준 〉

- 2018 결산액 기준, 강북구 기준 -

(단위 : 억원 / 배)

구 분	2018년 당 초 재산세 (A)	조정(공동과세 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 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계	23,676	11,838	11,838	23,676	0	-	-
종로구	886	443	474	917	31	3.3	1.5
중 구	1,226	613	474	1,087	△139	4.5	1.8
용산구	1,063	531	474	1,005	△58	3.9	1.6
성동구	658	329	474	803	145	2.4	1.3
광진구	544	272	474	746	202	2.0	1.2
동대문	501	250	474	724	223	1.8	1.2
중랑구	330	165	474	639	309	1.2	1.0
성북구	507	254	474	728	221	1.9	1.2
강북구	271	136	474	610	339	1.0	1.0
도봉구	271	135	474	609	338	1.0	1.0
노원구	467	233	474	707	240	1.7	1.2
은평구	468	234	474	708	240	1.7	1.2
서대문	440	220	474	694	254	1.6	1.1
마포구	935	468	473	941	6	3.5	1.5
양천구	689	345	473	818	129	2.5	1.3
강서구	870	435	473	908	38	3.2	1.5
구로구	536	268	473	741	205	2.0	1.2
금천구	357	179	473	652	295	1.3	1.1
영등포	1,022	511	473	984	△38	3.8	1.6
동작구	548	274	473	747	199	2.0	1.2
관악구	493	247	473	720	227	1.8	1.2
서초구	2,748	1,374	473	1,847	△901	10.1	3.0
강남구	4,792	2,396	473	2,869	△1,923	17.7	4.7
송파구	2,263	1,131	473	1,604	△659	8.4	2.6
강동구	791	395	473	868	77	2.9	1.4

\*특별시분 재산세(11,838억원)은 2018년도 중 실제 세입금(2018 세입 예산액: 1,076.672백만원)

## 나. 시세징수교부금

- 시세징수교부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244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749억 8천 2백만원 대비 13.2%(494억 5천만원) 증액된 수준임.

〈 시세징수교부금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9 예산	추 경(안)	증 감	비 율
시세 징수교부금	374,982	424,431	49,450	13.2
징수교부금(308-02)	374,982	424,431	49,450	13.2

※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sup>3)</sup>(「지방세징수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 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 경비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대상 세목은 시세 9개 세목 중 취득세 등 7개 세목임.

- 금번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 징수된 시세 세입(2조 68억원) 중 7개 세목에 해당되는 초과 세입액(1조 6,483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지급분의 정산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494억 5천만원(13.2%)을 증액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7)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 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7개 세목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b>02. 징수교부금</b>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의 원인이 되는 정산금의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의 불일치와 매년 10%를 초과하여 징수되고 있는 보수적인 지방세 세입 추계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재무국의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3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수납율 (B/A)
2018	170,965	170,965	191,033	20,068	111.7
2017	155,554	155,554	178,171	22,617	114.5
2016	141,258	141,258	165,693	24,435	117.3

-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2017.12.)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재의 징수교부금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분석 내용」**

- 자치구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된 자치구는 중랑구로 2.25%의 값을 보임. 다음으로는 도봉구 2.13%, 강북구 1.92%, 양천구 1.86%, 관악구 1.79%, 은평구 1.70%의 순을 보여,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0.29%에 불과함.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 0.38%, 영등포구 0.43%, 서초구 0.45%, 종로구 0.50%, 송파구 0.58%, 용산구 0.78%로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세목별로 보면, 소유분 자동차세가 2.8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세가 2.86%로, 이 두 세목은 현재의 3%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취득세 0.72%, 지역자원시설세 1.05%, 지방소득세 0.52%, 도시지역분 재산세 0.31%로 현재의 3%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 비율\_한국지방세연구원 >** (단위 : %)

구분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평균
계	0.72	1.05	2.86	0.52	0.31	2.87	0.80
종로구	0.82	0.56	1.65	0.24	0.13	3.56	0.50
중구	0.93	0.50	1.29	0.18	0.17	3.65	0.38
용산구	0.77	1.99	5.06	0.36	0.35	2.68	0.78
성동구	1.09	1.39	3.99	0.72	0.57	3.30	1.19
광진구	0.80	0.17	7.18	1.16	0.60	4.45	1.29
동대문구	1.09	0.69	2.82	1.18	0.03	3.94	1.26
중랑구	1.67	0.42	8.84	3.68	1.32	3.40	2.25
성북구	1.15	1.83	10.67	1.69	0.33	3.93	1.66
강북구	1.23	2.89	12.01	1.85	0.56	4.75	1.92
도봉구	2.03	0.33	12.24	2.13	0.31	3.12	2.13
노원구	1.33	1.80	6.63	1.45	0.33	1.99	1.45
은평구	1.06	2.49	8.02	2.23	0.45	5.07	1.70
서대문구	1.36	1.23	4.63	1.46	0.34	4.81	1.64
마포구	0.76	0.10	2.33	0.89	0.37	3.11	0.93
양천구	1.25	2.86	15.82	2.08	0.30	2.95	1.86
강서구	0.79	1.45	2.36	1.20	0.35	1.45	0.94

구분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평균
구 로 구	1.35	0.12	5.16	1.35	0.21	1.75	1.37
금 천 구	1.24	2.12	2.47	0.90	1.00	2.63	1.30
영등포구	0.60	0.31	0.73	0.29	0.12	1.46	0.43
동 작 구	0.23	0.36	7.46	0.92	1.51	3.99	1.10
관 약 구	1.48	0.96	10.14	2.17	0.28	3.19	1.79
서 초 구	0.46	1.32	1.46	0.28	0.08	1.70	0.45
강 남 구	0.10	1.43	1.59	0.26	0.15	2.42	0.29
송 파 구	0.54	0.05	0.93	0.68	0.05	1.57	0.58
강 동 구	0.77	1.81	6.49	0.88	0.32	4.12	1.23

○ 징수교부금 교부액이 이미 연 4,240억원(2019년 예산현액)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교부율(3%)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3%)의 인하 또는 시범적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징수비용 비율이 낮은 권역(강남, 서초, 송파구 등)의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검토 등 시세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 동남권역 징수교부금 관련 분석 자료(2018년 기준)>

구분	징수교부금			징수비용 비율(%)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전 재정수요충족도(%)
	교부액 (백만원)	교부율(%)	점유율		
합계(평균)	118,197	(2.29)	28.7	(0.44)	(122.5)
강남구	55,869	2.31	13.6	0.29	182.3
서초구	33,799	2.42	8.2	0.45	97.9
송파구	28,529	3.05	6.9	0.58	87.4

<시세징수교부금 자치구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월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계	295,448	100.0	346,794	100.0	377,989	100.0	419,907	100.0	262,530	100.0
종 로	10,986	3.7	12,859	3.7	13,342	3.5	16,147	3.8	9,409	3.6
중 구	18,906	6.4	19,942	5.8	21,496	5.7	24,141	5.7	13,438	5.1
용 산	9,194	3.1	10,888	3.1	12,849	3.4	14,774	3.5	8,601	3.3
성 동	8,179	2.8	9,620	2.8	11,758	3.1	12,975	3.1	8,198	3.1
광 진	7,532	2.5	8,915	2.6	9,628	2.5	11,035	2.6	7,066	2.7
동대문	7,654	2.6	8,993	2.6	9,645	2.6	11,080	2.6	6,983	2.7
중 랑	7,063	2.4	8,462	2.4	8,985	2.4	9,502	2.3	6,211	2.4
성 북	8,400	2.8	10,161	2.9	10,804	2.9	12,136	2.9	7,619	2.9
강 북	5,363	1.8	6,356	1.8	6,668	1.8	7,193	1.7	4,610	1.8
도 봉	6,042	2.0	7,069	2.0	7,471	2.0	7,818	1.9	5,144	2.0
노 원	9,258	3.1	11,470	3.3	11,747	3.1	12,475	3.0	7,784	3.0
은 평	8,596	2.9	10,152	2.9	11,300	3.0	11,984	2.9	7,703	2.9
서대문	6,438	2.2	8,482	2.4	8,540	2.3	9,302	2.2	6,159	2.3
마 포	12,662	4.3	14,449	4.2	15,249	4.0	17,379	4.1	11,041	4.2
양 천	9,696	3.3	11,803	3.4	12,365	3.3	13,418	3.2	8,564	3.3
강 서	12,966	4.4	15,620	4.5	19,103	5.1	20,295	4.8	13,299	5.1
구 로	10,249	3.5	11,436	3.3	13,288	3.5	14,836	3.5	8,958	3.4
금 천	7,331	2.5	8,538	2.5	9,594	2.5	11,124	2.6	7,493	2.9
영등포	18,212	6.2	20,194	5.8	21,679	5.7	25,845	6.2	15,967	6.1
동 작	7,657	2.6	9,795	2.8	10,400	2.8	11,312	2.7	7,280	2.8
관 악	8,769	3.0	10,511	3.0	11,127	2.9	12,134	2.9	7,849	3.0
서 초	22,820	7.7	27,607	8.0	30,947	8.2	33,882	8.1	21,416	8.2
강 남	42,898	14.5	48,017	13.8	48,716	12.9	56,277	13.4	33,200	12.6
송 파	18,811	6.4	24,021	6.9	27,712	7.3	29,336	7.0	19,603	7.5
강 동	9,766	3.3	11,434	3.3	13,577	3.6	13,507	3.2	8,935	3.4

※ 구청별 실제 집행한 내역임.

<2019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징수교부금	374,982	262,530	112,452	70.0%

※ 2019.5월말 기준

#### 다. 재정보전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예산의 지난연도 수입 배제

- 재정보전금은 특별시분재산세 추계액 전액을, 시세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 위임징수하는 7개의 세목 징수액 추계액의 3%를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하나, 재무국은 해당 세목에 대한 지난연도 세입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교부하고 있음.

※ 재정보전금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조 내지 제10조

※ 시세징수교부금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징수교부금 교부대상 :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공히 해당 지난연도수입 포함)

- 재정보전금 및 시세징수교부금은 법정 전출금으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사용되는 자치구 세입의 중추적인 측면임을 감안하여, 추가 세입 정산분과 함께 지난연도수입 제외된 부분을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지급하는 것은, 자치구의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것인바, 지난연도 시세 세입을 포함한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반복적인 고액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이 반복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9년 재무국 전출금 세목별 재원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예산액	시세 징수교부금 예산편성			공동재산세 전출금 예산편성		
		교부대상	교부 율	교부금	교부대상	교부 율	교부금
합 계	17,785,836	12,499,389	3%	374,982	1,212,025	100%	1,212,025
보 통 세 계	15,859,908	비대상					
취 득 세	4,273,788	4,273,788	3%	128,214			
레 저 세	131,021	131,021	3%	3,930			
담 배 소 비 세	565,175	비대상					
지 방 소 비 세	1,359,199	비대상					
주 민 세	544,955	544,955	3%	16,349			
지 방 소 득 세	5,238,562	5,238,562	3%	157,157			
재 산 세	2,615,116	비대상					
특 별 시 분	1,212,025	비대상			1,212,025	100%	1,212,025
도 시 지 역 분	1,403,091	1,403,091	3%	42,093			
자 동 차 세	1,132,092	비대상					
소 유 분	623,104	623,104	3%	18,693			
주 행 분	508,988	비대상					
목 적 세 계	1,704,361	비대상					
지역자원시설세	284,868	284,868	3%	8,546			
지 방 교 육 세	1,419,493	비대상					
지 난 년 도 시 세	221,567	포함누락					

**라.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발생**

- 재무국의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부실하고 전례답습적인 세입추계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종합적인 세입분석과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세입예산편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재무국 추경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집행액
2015	세무과	징수교부금	295,448	288,588	6,859	295,448
2016	세제과	법정출연금	1,636	0	1,636	1,636
	세무과	징수교부금	346,794	301,342	45,453	346,794
	세무과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473	317	156	473
	자산과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	195,879	64,879	131,000	195,953
2017	세제과	재정보전금	1,110,656	1,054,832	55,823	1,110,656
	세무과	징수교부금	377,990	325,071	52,918	377,990
2018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4,273	1,896	2,734	2,901
	세제과	재정보전금	1,197,593	1,128,175	69,418	1,197,593
	세무과	징수교부금	419,907	361,354	58,553	419,907
2019.6	세제과	재정보전금	1,331,649	1,243,665	87,894	-
	세무과	징수교부금	424,431	374,982	49,450	-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